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9.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순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902	장철민의원	2024.10.25.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5. 2. 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회부
2		2208974	오세희의원	2025.3.17.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 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 위원회 회부
3		2209866	김동아의원	2025.4.16.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 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 위원회 회부

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9. 22.)에
서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
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9. 25.)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
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중소벤
처기업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백년소상공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 및 지정 취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백년소상공인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음에도 소상공인은 규모가 작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생업이 중단될 경우 임금 근로자와 달리 정기적인 급여나 육아휴직, 출산휴가와 같은 복지혜택이 보장되지 않는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에너지 효율화 지원,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6호 신설).
-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호 신설).
-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9조제8호 신설), 이를 위하여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17호의4 신설).
- 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1항제4호 신설).
-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4항 신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
8.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의 지원

제16조의3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영업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1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4.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제4호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
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6.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u>
 <u><신 설></u>	<u>기술 활용 지원</u>
 <u><신 설></u>	<u>7.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u>
	<u>율화 지원</u>
	<u>8.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및</u>
	<u>일·가정 양립의 지원</u>
6. (생 략)	9.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6조의3(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의3(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①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u>

4. (생략) ② · ③ (생략) <u><신설></u> ④ (생략)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 17의3. (생략) <u><신설></u> 18. ~ 25. (생략)	<u>기간 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영업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 영업 관련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 ----- -----. 1. ~ 17의3. (현행과 같음) 17의4. <u>소상공인의 출산·육아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u> 18. ~ 25. (현행과 같음)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